

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19. 12. 27.(금) 총 4매(본문 3, 붙임 1)	
담당 부서 물류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이성훈, 사무관 이충수, 주무관 신성일 • ☎ (044) 201-3993, 3997	
보 도 일 시	2019년 12월 3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9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...1,035건 적발
 의심거래 주유소 300곳 합동점검...주유소 20곳 · 화물차 1,015대 행정처분 예정

(적발사례 1) 화물차주 A씨는 자가용에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.
 (적발사례2) 화물차주 B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와 공모하여 요소수를 주입하고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.

-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되어 보조금 재정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 -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전산망 연계,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된 점검기법을 적용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가 크게 증가하였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자체,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30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(10월 25일~12월 6일, 43일간) 위반 행위 1,035건을 적발하였다.
 -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주유소를 분류하고,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적용하였다.

- 그 결과 지난 '19년 상반기 합동점검에 비해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·가담한 주유업자 등의 적발이 대폭 증가*(약 8.9배)하였다.

* '19년 상반기 합동점검('18.11.26~'19.3.15)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88곳을 점검하여 위반 행위 116건(주유소 17곳, 화물차 99대)을 적발

□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공모·가담한 경우 928건, ②외상 후 일괄결제 71건,
 - ③허위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·가담한 경우 15건,
 - ④탱크로리 등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주유하거나 이에 공모·가담한 경우 11건, 주유소에 카드를 보관하고 결제한 경우 10건이다.

《주요 위반 행위》

(단위: 건수)

위반행위	계	차량	주유소
계	1,035	1,015	20
타 차량 주유	928	925	3
외상 후 일괄결제	71	71	-
주유량 부풀리기	15	5	10
이동주유	11	10	1
카드 위탁 보관	10	4	6

- 적발된 20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.
- 또한, 이번에 적발된 1,015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 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, 유가보조금 환수,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.

-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“이번 합동점검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,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충수 사무관(☎ 044-201-399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유가보조금 정의

- 에너지 세제 개편('01)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(현재 유류세에서 '01년 유류세 차액)을 영세 차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급

□ 유가보조금 지급자

-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

□ 유가보조금 지급단가(경유)

- 345.54원/ℓ (현재 유류세 - '01.6월 유류세)

□ 유가보조금 지급현황

(단위 : 억원)

연도	'13	'14	'15	'16	'17	'18
합계	24,335	24,193	24,212	25,077	26,126	26,141
버스	3,038	3,037	3,059	3,202	3,533	3,990
택시	5,197	5,153	4,805	4,733	4,619	4,458
화물	16,100	16,003	16,348	17,143	17,974	17,693

□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현황

('18.12.31. 기준)

구분	버 스	택 시	화물차
차량대수	52,937	252,179	411,368

□ 유가보조금 재원 : 지방세법 제136조(주행 자동차세)

□ 유가보조금 관련법규

구 분	지 급 근 거
노선·전세버스 및 택시	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, 시행령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
화물자동차	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, 시행령 제9조의14